

정액보조단체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	
번호	

○ 발의년월일 : '99. 3.

○ 발 의 자 : 문팔갑 의원 외 4인

1. 주 문

-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에서 예산지원한 정액보조 단체에 대하여 예산 집행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화순 군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정액보조단체 운영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- 활동기간 : '99. 3. 31 ~ 4. 30 (1개월간)

- 구성인원 : 6명

2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에서 예산지원한 정액보조 단체에 대하여 예산집행 지원상황과 집행상황, 정산상황 등을 조사 하여
- 예산 지원의 당위성과 예산 지원에 대한 효과능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자료로 활용코자 본건을 제안함.